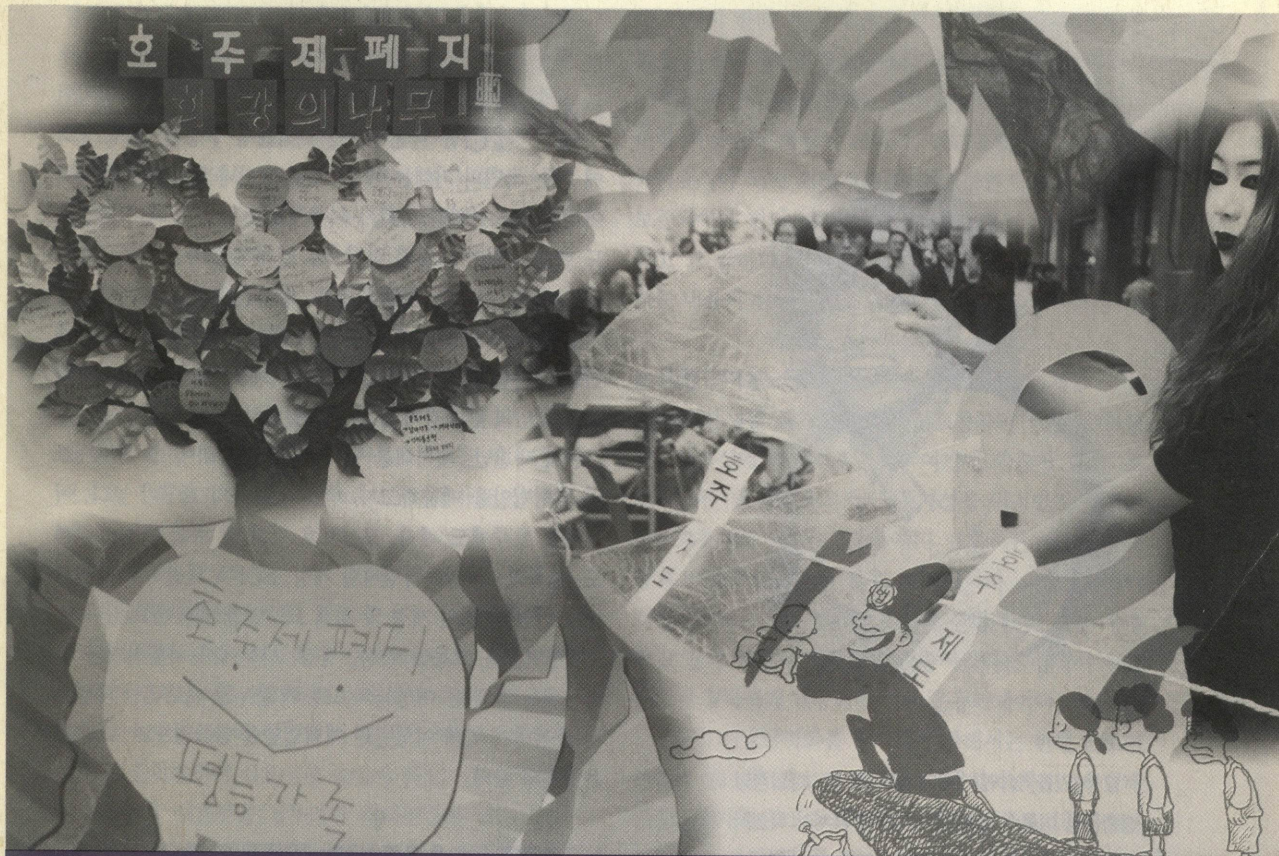


한국여성단체연합소식

• 한국여성단체연합소식(격월간) 제27호 • 발행일 | 2000년10월9일 • 등록 | 서울미02626 • 발행인 | 지하은희 최신헌수 리오경숙 • 편집인 | 남윤인순 • 발행처 | 사단법인한국여성단체연합 • 전화 | 02-2273-9535~8 • 팩스 | 02-2273-9539
 •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2층(100-391) • Internet : www.women21.or.kr • E-mail : KWAU@chollian.net •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 KWAU • 유니텔 : S4KWU • 편집디자인 | 그래픽시선 02-732-7902



여성마당

- 02 16대국회에서 개정되어야 할 여성관련 개혁법안

여성정책해설1

- 04 여성노동법관계법(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개정안

여성정책해설2

- 12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청원안

- 16 여성연합소식

- 59 회원단체소식

- 75 활동일지 · 행사안내

- 78 회원단체연락처 / 회원단체부설기관연락처

여성운동정보

- 20 혼자사는 여성, 자립지원방안 마련을 논의하다
 26 여성장애인 인권과 자립적 지원방안 제언
 29 2001년 여성관련 예산 요구안
 35 2000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를 발족하며
 38 부패방지법 ·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41 정통부는 과도한 규제와 권한집중을 가져올 무리한 통신문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43 6·15선언 전진시킨 남북 장관급 회담 결과에 대한 여성계 입장
 45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개정에 관한 여성계 입장
 48 국민 건강을 불모로 하는 의료계 전면 재폐업에 대한 입장
 49 2000년 국감시민연대 발족선언문
 51 부패방지법 · 자금세탁법 제정을 통해 부패사슬을 끊어야 한다
 53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를 발족하며
 55 '군산시 대명동 화재 참사로 인한 매춘여성 사망'에 대한 입장
 57 경총의 모성보호 역행 발언에 대한 여성(노동)계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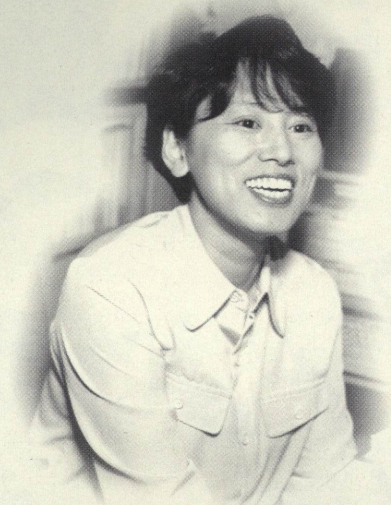


사단
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

16대 국회에서 개정되어야 할 여성관련 개혁법안

남윤인순 | 여성연합 사무총장



21세기를 열어갈 16대 국회에서는 실질적인 성평등을 이룰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확실히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의원 16명이 진출한 이번 국회에 거는 여성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여성의원들이 여성관련 개혁법안을 적극적으로 발의하고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

4·13 총선에서 시민의 힘으로 부패·무능 정치인을 낙선시키면서 새롭게 구성된 16대 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매우 크다. 그러나 국회법이 개정되어 2개월에 한번씩 국회가 의무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음에도 현재 국회는 여야의 정쟁으로 열리지 못하는 식물국회가 되고 있다. 산적한 민생과 청원, 남북관계 변화, 제2경제위 기설 등 논의해야 할 사안이 많지만 국민을 외면한 채 상생하는 정치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견제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새천년, 새시대를 열어갈 16대 국회에 그 어느때보다 개혁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각 부문의 요구가 높다. 여성들도 호주제도 폐지, 모성보호 강화 및 유급 육아휴직제도, 성폭력·가정폭력방지법 개정, SOFA 개정시 여성인권 조항 신설 등 법안 개정 및 정책 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여성연합은 그동안 가정, 직장, 사회에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해 온 여성들의 고통과 분노를 제도적인 차원에서 풀어내기 위해 여성관련 개혁법안을 만들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부장제 악습을 온존시키는 '호주제도' 폐지

호주제도는 남계혈통을 우선하여 호주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민법 제 984조), 여성보다 남성이 우월하다는 인식을 조장하는 한편, 아들선호사상을 고착시켜 양성평등을 저해하고 처를 부의 가에 입적하도록 하고 있어(민법 제 826조 3항) 개인의 존엄을 위협하고 아내를 남편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자녀의 경우도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민법 제 781조 1항) 어머니의 권리를 아버지의 권리보다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 제 4편 2장, 8장을 삭제하고 제 826조 제 3항 부부간의 순위를 개정해야 한다.